

대 부 재 산 증 명 서

제 호				
소 유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<p><u>대부재산의 표시</u></p>				
<p>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합니다. 다만, 이 증명서는 동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"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,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."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지방보훈청장 (인) 보훈지청장</p>				